1. 개정이유

도시·군계획시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시·군 계획시설별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, 교통체계 변화 등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 적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

이에 따라 편익시설 허용원칙을 재정립하고 보다 다양한 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 편의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

아울러,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('23.6.21)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 및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수지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・보완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·군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허용체계 개편(안 제6조의2제1항제2호)
 - 1) 그 간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일부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시설의 특성상 편익시설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광장, 녹지 등

- 6종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도시·군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
- 2) 편익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(총포판매소, 고시원, 제조업소, 수리점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을 허용하고, 근린생활시설과 기존 허용하는 시설 외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
- 3)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용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주거용 시설, 분양·임대·회원제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, 회원제 골프장은 편익시설에서 제외
- 나. 허용대상 편익시설이 갖춰야 할 요건 정비(안 제6조의2제2항제3호) 허용 가능한 편익시설의 요건으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등의 시설이 아닐 것을 추가
- 다. 개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정비(안 제6조의2제5항 신설) 도시·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이 있고 해당 법령에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「도시· 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
- 라. 도시철도부대사업 시설을 도시·군계획시설에 포함(안 제22조제2호)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국가철도와 동일하게 부대사업 시설을 도시·군 계획시설로서 도시철도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

마. 환승센터의 결정기준 규정(안 제32조제1호)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('23.7.18)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로 추가된 환승센터에 대하여 상위 분류체계인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중 관련 사항을 따르도록 추가

- 바. 유원지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요건 명확화(안 제58조제1항제3호) 유원지 내 휴양시설로서 분양·임대·회원제 숙박시설은 설치가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·군계획시설 사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명확히 명시
- 사. 인용조문 정비(안 제58조제5항)

2010. 3. 16.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 삭제된 제58조제1항제4호·5호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

- 아.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정비(안 제119조제2호) 유수지를 복개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의 건축 수반여부에 상관없이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조문 정비
- 자. 유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(안 제119조제3의2호나목)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를 유수지에 허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2024. 12. 5. ~ 2025. 1. 14.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2항"을 "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"도시·군계획시설"을 "광장, 녹지, 공공공지, 공 동구, 하천, 유수지를 제외한 도시·군계획시설"로, "설치하는 시설"을 "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"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, 제4호(총포판매소, 고시원, 제조업소·수리점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의 시설
- 나. 이 규칙에서 각 도시·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따로 정한 시설
- 다.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 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(주거용 시설, 분양·임대·회원제 숙박시설, 오피스텔, 회원제 골프장은 제외한다.)

제6조의2제2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설이 아닐 것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·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부대시설 및 편의 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.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2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6호의2 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

제3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"를 "차고지, 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센터"로 하고,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"복합환승센 터"를 "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센터"로 한다.

제33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"제1호 및 제2호"를 "제1호"로 한다.

제58조제2항제3호 중 "휴게실·놀이동산·낚시터·숙박시설·야영장"을 "휴게실·놀이동산·낚시터·숙박시설(분양·임대·회원제시설은 제외)·야영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"도시·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"을 "도시·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"을 "도시·군계획시 계획시설 결정권자에게"를 "도시·군계획시설결정권자에게"를 "도시·군계획시설결정권자에게"를 "도시·군계획시설결정권자에게"를 "도시·군계획시설결정권자에게"를 "대64조제2항제3호, 제101조제3항"을 "제64조제2항제3호, 제101조제3항"을 "제64

조제2항제3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1항제4호·제5호 및 제2항"을 "제2항"으로 한다.

제64조제2항제3호 중 "도시·군계획시설결정권자"를 "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권자"로 한다.

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편익시설(제1항 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)"을 "편익시설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나. 관리사무소·창고·매표소·안내소·조명시설·급수시설·배수시설·방수시설·각종 표지판·쓰레기장·주차장·휴게실·탈의실·욕실·화장실

제10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"다만,"을 "다만,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

제외한다. 이하 같다)가 유수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"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"경우로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,"를 "경우로서"로 하며, 같은 호 나목4) 중 "도시·군계획시설결정권자"를 각각 "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권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의2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시·군계획시설 내 편익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「국토의</u>	제1조(목적) <u>「국토의</u>
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	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
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	<u>43조제3항</u>
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	
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	
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	
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	
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6조의2(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	제6조의2(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
설치) ① 도시・군계획시설에는	설치) ①
주(主)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	
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	
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	
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편익시설: <u>도시·군계획시설</u>	2 <u>광장, 녹지, 공공공</u>
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	지, 공동구, 하천, 유수지를 제
활성화를 위하여 <u>설치하는 시</u>	외한 도시·군계획시설
<u>설</u>	<u>설</u> 치하는 다
	음 각 목의 시설
<u><신 설></u>	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
	<u>1 제3호, 제4호(총포판매</u>
	소, 고시원, 제조업소・수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-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2. (생략)
- 3.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 건에 적합하여야 한다.

가. • 나. (생 략)

<신 설>

- ③ (생 략)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
리점, 단란주점, 안마시술 소 제외)의 시설

나. 이 규칙에서 각 도시·군
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
기준으로 따로 정한 시설
다.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
않는 시설로서 도시·군계
획시설 결정권자 소속 도
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
아 설치하는 시설(주거용

시설, 분양・임대・회원제

숙박시설, 오피스텔, 회원

② -----

제 골프장은 제외한다.)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

가. • 나. (현행과 같음)

- 다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위배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설이 아<u>닐 것</u>
- ③ (현행과 같음)

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 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 · 군계획시 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다.

<신 설>

제22조(철도) 이 절에서 "철도"라 제22조(철도) -----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 다.

- 1. (생략)
- 2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시철도
- 3. 삭 제
- 4. (생략)
- 제32조(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) 제32조(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)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
 - 1.여객자동차터미널, 여객자동 1.-----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 • 군계 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부 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 대사업의 시설
- 4. (현행과 같음)

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, 전 세버스운송사업용 <u>차고지 및</u> 복합환승센터

가. ~ 라. (생 략)

마. 준주거지역 · 중심상업지 역 · 일반상업지역 · 유통 상업지역 • 준공업지역 •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. 다만. 시내버스운송사 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 차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 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, 복합환승센터 는 제1종전용주거지역, 보 전녹지지역,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 역에 설치할 수 있다.

2. (생략)

제33조(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제3 설치기준) ① (생 략)

②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 다만,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-

차고지, 복합
환승센터 및 환승센터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마
복합환승센터
<u>및 환승센터</u>
2. (현행과 같음)
33조(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
설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2)

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서목나)에 따른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편익시설: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

가. (생략)

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

1 제4호나목・마목・차목
・파목(골프연습장에 한정
한다)・더목 및 러목(안마
시술소에 한정한다)의 시
설

다. ~ 카. (생 략)

3.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.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

1. (현행과 같음)
2
가. (현행과 같음)
<삭 제>
다. ~ 카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1호</u>

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.

③ (생략)

- 제58조(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 준) ① (생 략)
 - 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.
 - 1. 2. (생략)

 - 4. 5. (생략)
 - 6. 편익시설: 다음 각 목의 시설
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
 1 제3호(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)의 시설
 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

 1 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

 차목(동물병원, 동물미

 용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

<u>.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58조(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
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 <u>휴게실·놀이동산</u>
·낚시터·숙박시설(분양·임
대ㆍ회원제시설은 제외)ㆍ야
<u>영장</u>
4.·5. (현행과 같음)
6
<u><삭 제></u>

한 것에 한정한다)·하목(금융업소에 한정한다)·더목 및 러목(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)의 시설

다. ~ 아. (생 략)

- 7. (생략)
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목적・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・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(해당 도시・군계획시설결정 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제64조제2항제3호, 제101조제3항 및 제119조제2호나목4)에서 같다)의 심의를 거친 시설
- ③ ④ (생 략)
- ⑤유원지중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·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제64조(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제설치기준)①(생략)

- ②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 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· 2. (생략)
- 3.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 사한 시설로서 도시・군계획 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

제84조(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)

- ① 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<u>3호(같은 호 가목</u> 및 아목은 제외한다)의 시설
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4호가목・다목・라목・바목 부터 자목까지 • 카목 • 타목 • 파목(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) ・하목・너목 및 러목(노래연 습장에 한정한다)
- 3. ~ 8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90조(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) 제90조(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)
 - ① 학교(제88조제3호 및 제4호 의 학교에 한정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

(2)
<u>.</u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<u>도시·군계획</u>
시설 결정권자
제84조(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)
①
·.
<삭 제>

- 3. ~ 8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있다.

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📗 3호(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 지는 제외한다)의 시설
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4호가목(극장, 영화관,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 다) · 라목 · 바목 · 카목(직업 훈련소에 한정한다) • 파목(골 프연습장은 제외한다) 및 하 목(금융업소에 한정한다)의 시설
- 3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95조(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제95조(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
 - 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(제1항제6호의 편익시 설은 제외한다)을 설치할 수 있 다.
 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 목의 시설
 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| <삭 제> 4호가목(극장, 영화관, 음악당

<삭 제>

<삭 제>

- 3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음)

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 다) • 라목 • 바목 • 파목(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) 및 하목 (금융업소에 한정한다)의 시 설

3. ~ 8. (생략)

- 제98조(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제98조(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 다.
 - 1. 「건축법 <u>시행령」 별표 1 제</u>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4호가목(극장, 영화관,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 다)・라목・바목・아목・자목 • 파목(골프연습장은 제외한 다) 및 하목(금융업소에 한정 한다)의 시설
 - 3. ~ 8. (생략)
 - ② (생 략)
- 제101조(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 제101조(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)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 | 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(생략)

3. ~ 8. (현행과 같음)

기준)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기준) ① ------

<삭 제>

<삭 제>

- 3. ~ 8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기준) ①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 2. ----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 -----할 것 ----

가. (생략)

- 나. 관리시설: 관리사무소·

 창고·매표소·안내소·

 조명시설·급수시설·배

 수시설·방수시설·각종

 표지판·쓰레기장
- 다. 편익시설: 주차장·휴게 실·매점·휴게음식점· 일반음식점(골프장에 설치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 •탈의실·욕실·화장실
- 3. ~ 5. (생략)
- 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(제1항 제2호다목의 시 설은 제외한다)을 설치할 수 있 다.
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4호가목(극장, 영화관,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 다)・라목・바목・아목・자목

	_							
가.	(ই্	현행3	라 깉	음)				
<u>나.</u>	į	<u></u> 알리/	사무:	소 •	창.	고 •	메	丑
	<u>소</u>	• 안	내소	<u>.</u>	조명	팅 시 <u></u>	설	•
	급-	<u> 수시</u>	설 •	배	수거) 설	•	방
	<u>수</u> /	시설	• 각	종	丑,	지편	<u> </u>	<u>쓰</u>
	레 :	기장	• 주	- 차	장 .	· 휴	· 게	<u>실</u>
	• Ę	탈의/	실•	욕슨	<u>]</u> • ;	화장	}실	_
삭	제	<u>></u>						

3. ~ b. (연행과 같음)
2
<u>편익시설</u>
<삭 제>

· 파목(골프연습장은 제외한 다) 및 하목(금융업소에 한정 한다)의 시설

3. ~ 8. (생략)

③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운동장은다음 각호의 운동장으로 한정한다.
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
- 2. 「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
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
 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
 른 경기장시설
- 3. 주무부장관, 특별시장, 광역 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

3. ~ 8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 ·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운동장

④·⑤ (생략)

구조·설치기준) ① (생 략)

- ② 연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📗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
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4호가목(극장, 영화관,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 다) • 라목 • 바목 • 아목 • 카목 (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) • 파 목(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) 및 하목(금융업소에 한정한 다)의 시설

3. ~ 8. (생략)

- 제109조(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제109조(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) ① 사회복지시설에는 |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.
 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│ 〈삭 제〉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06조(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제106조(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·설치기준) ① (현행과 같 음)

<삭 제>

<삭 제>

3. ~ 8. (현행과 같음)

설치기준) ① -----
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| <삭 제> 4호가목(극장, 영화관,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 다)・아목・카목(직업훈련소 에 한정한다) • 파목(골프연습 장은 제외한다) 및 하목(금융 업소에 한정한다)의 시설

3. ~ 6. (생 략)

② (생략)

제111조(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 제111조(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 정기준 및 구조・설치기준) ① |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 다.

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4호가목(극장, 영화관,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 다)・아목・카목(직업훈련소 에 한정한다)·파목(골프연습 장은 제외한다) 및 하목(금융 업소에 한정한다)의 시설
- 3. ~ 7. (생략)
- ② (생략)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정기준 및 구조·설치기준) ①

<삭 제>

<삭 제>

- 3. ~ 7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14조(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제114조(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

및 설치기준) ① (생 략)

- ② 청소년수런시설(「청소년활 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다목 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 정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4호바목・아목・카목(직업훈 련소에 한정한다) 및 하목(금 융업소에 한정한다)의 시설
- 3. 4. (생략)
- ③ (생략)
- 제119조(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제119조(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정기준 및 구조・설치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
 - 1. (생 략)
 - 2.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 | 2. ------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다음 각|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| 수 있다.

및	설	치기	준)	1	(현	행과	같-	음)
2				- — — -	_ — — -			
		_ — — -						
<스	<u>}</u>	제>	-					

- 3. 4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구조・설치기준) 유수시설의 결 구조・설치기준) ------

- 1. (현행과 같음)
- ----- 다만. 특별시 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 ·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 한다. 이하 같다)가 유수지 관 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

- 가.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, 홍수 등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나.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 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
 - 1) ~ 3) (생 략)
 - 4) 해당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. 다만,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 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건축하려는 경우로

<u>관리하는 경우로서</u>
가
<u> 경우로서</u>
나
-
1) ~ 3) (현행과 같음)
4) <u>도시·군계획시설</u>
<u> 결정권자</u>

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
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
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)부터 3)까지의 요
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도시·군계획시설결
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3. (생략)

3의2.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 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 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 할 것

가.·나. (생 략)

<신 설>

4. • 5. (생략)

- 제153조(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저설치기준) ① (생 략)
 - ② 종합의료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(생략)
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3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 는 시설(환자 및 환자보호자 용 숙소와 함께 설치하는 시 설로 한정한다)
-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<u><</u>삭 제> 3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
- 4. (생략)
- ③ (생략)

1. (현행과 같음)

- 4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